

1. 보험회사 RBC제도 도입 배경
2. 주요국의 RBC제도 도입사례
3.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구분
4. RBC제도 도입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RBC제도 도입이 보험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가용자본 주요 항목
7. 요구자본 산출시 개별리스크의 통합
8. RBC제도 리스크부문별 개념 및 기대효과
9. RBC제도와 바젤Ⅱ의 차이점
10. 보험리스크 산출시 SolvencyII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11.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준비금리스크를 측정하지 않는 이유
12. 보험리스크 측정대상에 준비금리스크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13. 연금보험등에서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
14. 갱신행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위험계수를 차등화한 배경
15. 회사별로 보험리스크 위험계수를 차등화한 배경
16. 생명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한 위험계수 설정방법
17.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리스크 반영 기준
18.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에 있어 외국사례



## 1 보험회사 RBC제도 도입 배경

-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특히 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증권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출현함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제도로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sup>1)</sup>
- 미국(1993), 일본(1996)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 규제제도<sup>2)</sup>를 도입·운영중
  - 한편, 우리원 은행부문은 국내은행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감독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BIS협약을 2008년부터 시행
- 보험부문에서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한계와 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금융·보험환경에 맞는 '위험기준 자기자본 규제(RBC)제도'를 2009년 4월 도입

1)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i) 보험종목별 리스크 차이의 미반영, ii)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로 인한 금리리스크 미반영, iii) 자산운용관련 리스크 측정의 정교성 부족 등 한계 노출

2)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금리, 보험,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

## 2 주요국의 RBC제도 도입사례

- 과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나, 1989년 캐나다가 최초로 RBC방식의 제도로 전환한 이후 점차 RBC방식 채택 국가 증가
  - 현재 미국(1993), 일본(1996), 호주(2002), 영국(2004), 싱가포르(2004) 등 주요국이 RBC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지속 보완 중
- EU는 리스크 중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의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 유럽보험감독자위원회(CEIOPS)는 2007.7월 유럽의회에 Solvency II의 기본 체계를 상정하고, 네차레의 계량영향 평가(QIS)를 실시(2008년)
  - 2009년 Solvency II 공통지침안 확정 예상
    - 2010년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2년 유럽 각국의 국내 법규 개정 목표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지급여력 평가제도의 국제 공통기준을 마련 중
  - 2007.2월 지급여력 평가 공통구조를 발표하고, 감독요구자본 등 분야별 지침\* 마련(2007.10월)
    - \* IAIS는 보험환경이 각기 다른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세계 보험감독관 협의회 → IAIS의 지급여력 평가 공통기준(평가구조, 지침)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는 원칙(Principle) 마련이 목표

### 3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구분

- 지급여력제도<sup>3)</sup>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에 따라 고정비율방식(EU방식), RBC 방식(risk-based capital), 시나리오방식(scenario approach), 확률론적방식(probabilistic approach) 으로 구분

지급여력제도의 구분

| 구 분             | 산출방법  | 비 고   |
|-----------------|---|---|
| 고정비율<br>(EU) 방식 | 대차대조표상의 일부 부채항목인 대리 변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금액 산출   | 대리변수는 생명보험은 책임 준비금과 위험보험금, 손해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사용                    |
| RBC<br>방식       |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세분화하고, 위험 노출규모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금액 산출                                   | 대차대조표 자산 및 부채항목을 모두 고려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세분화함에 따라 고정비율방식 보다 다양한 대리 변수 활용 |
| 시나리오<br>방식      | 특정 변수가 보험회사의 전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 계산된 결과치를 중심으로 금액 산출                 | 시나리오는 보통 미래의 보험 사고율, 보험료, 손해진전, 대형 보험사고, 인플레이션, 금리, 자산수익률 등으로 구성  |
| 확률론적<br>방식      | 통계적 분포를 활용하여 리스크 산출 대상변수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급여력 악화 가능성과 리스크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금액 산출 |   |

- 시나리오 방식과 확률론적 방식은 고정비율, RBC 방식보다 자본의 개념이 명확하고 리스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 산출방법이 복잡하고, 필요한 자료의 양이 과다하고 객관화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 실효성이 적음

3) 지급여력제도는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

## 4 RBC제도 도입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RBC제도의 도입은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내실위주 경영전략으로의 전환을 요구
  - RBC제도는 자산·부채 포트폴리오의 특성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함에 따라 시장규율 제고
    - 자본력 우수 회사는 공격적인 경영전략\*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반면
      - \* 고위험 고수익 자산운영, 대재해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 높은 자본력을 요구하는 신규 시장 진입이 가능
    - 자본력 취약 회사는 외형성장보다 비용절감, 저성장등 내실위주의 질적 경영전략으로의 전환 예상
  
- 또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제고되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현행 지급여력제도 보다 다소 높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요구하므로 자본확충, 잉여금 내부유보 또는 인수·합병 활성화 등이 예상
  - 신규 진입 측면에서도 보다 높은 자본비용이 요구

## 5 RBC제도 도입이 보험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RBC제도 도입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 향상되므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
  
-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보험가격에 자본비용을 반영하여 보험료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다양한 보험상품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등 보험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예상

## 6 가용자본 주요 항목

-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버퍼(Risk Buffer)
- RBC제도의 가용자본은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지급여력금액\*과 동일
  - \*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구분 없이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으로 산출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합산·차감항목

|          |                                   |   |
|----------|-----------------------------------|---|
| 합산<br>항목 | 공통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br>정상·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br>후순위채무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생보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br>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br>금액<br>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          | 손보                                | 비상위험준비금<br>저축성보험료 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 적립한 금액   |
|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 무형자산,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차 |   |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과거 자산재평가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2001년부터는 법규 및 기준상으로 자산재평가가 인정되지 않아 지금은 발생하지않고 있음



## 7 요구자본 산출시 개별리스크의 통합

- 개별 리스크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요구자본(총리스크) 산출 기준을 마련
  - 개별리스크를 단순합산하여 총리스크를 산출할 경우 계산이 간편하나 총 리스크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
  - 리스크간 상관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총리스크 산출기준 마련

### 요구자본(총리스크) 산출방법별 장단점

| 구 분 | 단순 합산   | 상관관계 적용   |
|-----|---|---|
| 적용예 | • 캐나다, 호주, BIS(은행) 등  | • 미국, 일본 등  |
| 장 점 | • 총리스크 계산이 간편함<br>• 개별리스크의 총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쉽게 파악 가능                                | • 리스크별 연관성 반영<br>• 총리스크 과대계상 회피   |
| 단 점 | • 총리스크 과대계상 가능성<br>(모든 리스크가 동시에 손실로 현실화되는 상황을 상정)                               | •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br>• 개별리스크의 총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 산출예 | • 총리스크 =<br>보험리스크 + 금리리스크 + 시장리스크 + 신용리스크 + 운영리스크<br>※ 개별 리스크가 동시에 손실화되는 상황을 상정 | • 총리스크 =<br>$\sqrt{\text{보험}^2 + \text{시장}^2 + (\text{금리} + \text{신용})^2} + \text{운영}$ ※ {금리, 신용} 사이의 상관계수는 '1', {보험, 시장, 금리·신용} 사이의 상관계수는 '0'으로 상정 |

## 8 RBC제도 리스크부문별 개념 및 기대효과

| 구 분          |          | 주 요 내 용   |
|--------------|----------|---|
| 보험<br>리스크    | 개념       | ①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br>-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예정위험률과 실제 경험위험률(손해율)의 차이로 인한 손실위험<br>- 준비금리스크 :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지급보험금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위험(손해보험) |
|              | 기대<br>효과 | - 보험종목간 리스크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   |
| 시장·신용<br>리스크 | 개념       | ② 시장리스크<br>-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변수의 변동시 단기매매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br>③ 신용리스크<br>-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위험  |
|              | 기대<br>효과 | - 파생상품,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건전 투자 유도   |
| 금리<br>리스크    | 개념       | ④ 미래의 이자율 변동과 자산·부채 만기구조 차이 등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할 위험   |
|              | 기대<br>효과 | - 장기채권 투자 및 금리연동형보험 판매확대 등으로 금리리스크 헤지 유도  |
| 운영<br>리스크    | 개념       | 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내부통제제도 등으로 인한 손실위험  |
|              | 기대<br>효과 | - 불완전판매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등   |

## 9 RBC제도와 바젤II의 차이점

- 보험업 고유의 특성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별 특성이 다양하여 RBC제도가 바젤II에 비해 복잡함
  - 신BIS는 자산(신용, 시장)리스크, RBC제도는 자산·부채리스크 중심
  - RBC제도는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마련 운영하는 반면, 바젤II는 국제 공통기준 적용
  - 보험권의 경우 업종(생명/화재/자동차/재보험/보증) 및 회사의 규모·자본력·리스크관리능력 등이 매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

| 구 분          | RBC제도  | 바젤 II                             |
|--------------|--|-----------------------------------|
| 리스크 구분       |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리스크  | 시장·신용·운영리스크                       |
| 업무내용         |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 기준 마련<br><br>※ 국제 공통기준 부재로 국가별 상이한 RBC제도 운영 | BIS에서 제시한 국제공통기준의 국내 적용방안 마련      |
| 리스크계수 산출 필요성 | ▶ 국내 보험 및 금융환경에 적합한 리스크계수 별도 산출<br><br>▶ 정기적 리스크계수 분석·조정                   | 불필요<br>(BIS가 제시한 기준 적용)           |
| 적용대상 회사      | 51개 보험회사<br>(생보 22개, 손보 29개)   | 19개 은행<br>(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
| 특이사항         | 회사별 영업특성, 규모, 리스크관리 능력의 격차가 매우 큼   | 은행별 영업특성, 규모,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음 |

## 10 보험리스크 산출시 Solvency II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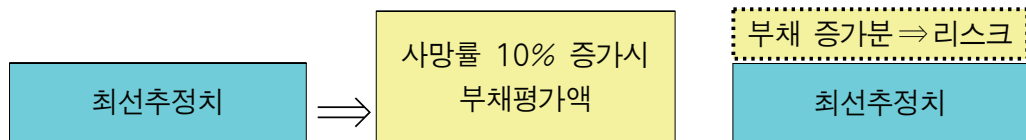
□ Solvency II 는 부채시가평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임

- 평가시점의 시장금리, 사망률, 사업비율, 해약율 등을 반영한 책임준비금의 최선 추정치\*(best estimates)가 산출되면,

\*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그 기초 하에 시나리오\* 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을 산출하여 이를 보험리스크로 정의

\* 예: 사망률 10% 증가, 연금보험 생존율 25% 감소 등



□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행년도 방식(lock-in)으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원가주의 개념의 책임준비금임

- Solvency II는 평가시점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채를 평가하므로 요율 책정시의 예정 손해율에 비하여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면 악화된 실적에 기초해서 부채를 재평가하게 됨(부채 증가 효과)

- 즉, 부채가 증가할 위험중 일부는 시가평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Solvency II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부채의 변동성만을 측정하는 방법

□ 우리나라의 책임준비금은 요율책정시의 예정 기초율이 그대로 부채 평가시 사용되므로 악화된 손해율로 인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평가시점의 최선 추정치를 산출한 후 시나리오를 이용해 준비금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SolvencyII의 적용을 위해서는 향후 많은 검토가 필요

## 11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준비금리스크를 측정하지 않는 이유

- 준비금리스크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추산하여 적립한 지급준비금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함
- 손해보험은 사고의 빈도 및 심도의 변동성이 큼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고유형별로 보험금의 변동이 크고,
  - 특히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긴 특성으로 인하여 물가인상, 의료수가 상승, 소송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실제 지급할 보험금에 비하여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리스크로 정하여 산출
- 반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주로 정액 급부형태이고 사고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 지급준비금과 실제 지급보험금과 차이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준비금리스크를 측정하지 않음

## 12 보험리스크 측정대상에 준비금 리스크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준비금리스크가 준비금 부족에 따른 리스크이나, 여기서 말하는 준비금의 부족이란 보험회사가 지급준비금을 임의로 과소 적립하여 재무건전성을 부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과거 경험통계를 이용한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적립하였음에도 실손 보상의 원칙 및 사고발생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장기인 보험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 물가인상, 의료수가 상승, 소송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既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실제 지급할 보험금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말함
- 따라서 보험리스크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가격리스크 개념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통제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13 연금보험 등에서 장수리스크를 요구 자본에 반영하는 방안

-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장수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따라서 EU의 Solvency II에서는 사망리스크와 별도로 장수리스크를 분류하고 사망률의 감소가 연금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장수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영구적으로 25%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책임준비금의 증가금액을 장수리스크로 정의
  - 일본에서도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분류하고, 연금 책임준비금의 1%를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음(미국 RBC에서는 장수리스크를 산출하고 있지 않음)
- 우리 RBC 기준안에서도 장수리스크를 산출하지 않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산출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보험회사에서 계약비중이 큰 40세가입, 60세 연금개시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 연금개시 때까지 계약유지 비율은 20% 정도이며, 이 중 일시금이 아닌 종신 연금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30~40% 수준이어서, 현재 기준으로 현가율, 유지율 및 종신행 선택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장수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향후 추가적으로 장수리스크 측정모형을 마련하여 보험리스크에 포함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 14 갱신행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위험계수를 차등화한 배경

-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적용된 보험가격이 변경되지 않지만
  - 갱신행특약은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위험요율을 일정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음
  - 다만, 판매기간이 짧아 별도의 위험계수 산출은 어려움
    - \* 경험실적 축적기간 : 손보사 4년, 생보사 1년

- 하지만,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개발된 상품에 대한 감독의 차별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 유도 차원에서

☞ 갱신행특약에 대해서는 갱신회기(3,5년)별 할인율 적용

| 試案             | 최종안                      |
|----------------|--------------------------|
| ○ 표준 위험계수 적용   | ○ 갱신회기별 할인율 반영           |
| ○ 위험보험료 × 표준계수 | ○ 위험보험료×표준계수×(갱신회기별)할인율* |

\* 생명보험 : (갱신회기 3년이하) 44%~68%, (4~5년) 59%~86%  
 장기손해보험 : (갱신회기 3년이하) 43%~61%, (4~5년) 65%~73%



## 15 회사별로 보험리스크 위험계수를 차등화한 배경

- 정확한 보험리스크 산출을 위해서는 회사마다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여 회사별로 차별화된 리스크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나
  - 일부 대형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리스크 측정을 위한 기초통계가 불안정하여 리스크 측정결과에 왜곡 발생
  - 특히, 회사별 리스크계수를 분기별로 시험산출해본 결과 산출시점마다 리스크량이 크게 변동하는 등 회사가 확보해야 할 규제자본을 예측하기 힘들어 경영상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2009.4월 시행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에서는 상품별 표준계수를 제시하여 위험액을 산출토록 하고
  - 회사별 실적을 반영하여 정밀하게 측정된 위험액 산출은 향후 도입될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통해 개선토록 함
- 하지만, 표준계수를 적용할 경우 회사 경영진의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수립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업계 의견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하여
  -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리스크 산출시 회사별 실적치 기준의 할인·할증률을 적용
  - ☞ 현재 표준계수를 회사의 과거 일정기간(5년) 경영실적과 업계평균 실적을 감안한 조정률 적용

| 試案                       | 최종안                     | 비고              |
|--------------------------|-------------------------|-----------------|
| ○ 표준위험계수를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 ○ 회사별 실적을 반영하여 위험계수 차등화 | 조정률 최대한도 : ±30% |
| ○ 보유보험료×표준계수             | ○ 보유보험료 × 표준계수 × 조정률*   |                 |

\* 회사별 합산비율을 업계전체 합산비율과 비교하여 산출하며, 할인할증 적용결과 위험계수가(-)일 경우 0으로 처리

## 16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위험계수 설정방법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 장기계약의 경우에도 재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과거 실적에 따라 필요시 할인·할증률을 변경하는 등 단기계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 10년간의 현금흐름 추정을 통해 산출된 보험리스크계수를 적용할 경우 리스크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으며,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갱신형상품에 적용할 위험계수를 재보험계약에도 공통 적용하여 리스크를 산출
    - ☞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 수재에 대해서는 3년 이하 갱신보험 할인을 적용

## 17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리스크 반영기준

- 시장리스크 측정시 보유목적 등에 따라 매매목적용과 위험회피목적용으로 분류,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노출된 리스크에 대하여 요구자본을 산출·가산하고, 위험회피 파생상품은 위험 경감효과를 인정하고 있음

### 〈매매목적 파생상품 예시〉

- 매매목적용으로 주가지수선물을 매입한 경우,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요구자본에 가산함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예시〉

-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선물환거래를 체결하였을 경우 동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는 채권잔액에서 선물환계약금액만큼 차감하여 환리스크 측정

#### 위험회피 파생거래로 분류되기 위한 주요 요건

- ①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 목적,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 \*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함
- ②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높은 위험회피효과\* 기대
  - \*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 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

## 18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에 있어 외국 사례

- 주요국 보험권에서는 불완전판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일반경영위험을 운영리스크로 정의하며, 계량화보다는 손실 예방에 중점
  - 해외 사례를 보아도 보험료나 준비금의 일정 비율 혹은 他 리스크의 일정 부분 등 단순한 형태로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음
  - 한편, 은행은 신BIS협약의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보다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

### 주요국의 운영리스크 산출대상 · 방법 비교

| 구 분 |             | 산출대상                                    | 리스크 계수                         |
|-----|-------------|---|--------------------------------|
| 보험  | 미 국<br>(생보) | ○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 3.08%                          |
|     |             |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 0.77%                          |
|     | 일 본         | ○ 자산운용리스크 + 보험리스크<br>+ 예정이율리스크          | 2 ~ 3%*                        |
|     | Solvency II | ○ 수입보험료 기준과 책임준비금<br>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 | 수입보험료 2 ~ 3%<br>책임준비금 0.2 ~ 2% |
| 은행  | BIS         | ○ 총수입<br>(순이자이익 + 순비이자이익)               | 15%                            |

\* 당기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3%, 나머지는 2% 적용